

#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62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5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조례 제명을 물적 문화유산만을 나타내는 「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」에서 유·무형 문화유산을 포괄하는 「안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」로 변경하고자 함
- 향토문화재 보존·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안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위원회의 구성·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(향토유적 → 향토문화재)
- 향토문화재의 정의 보완(안 제2조)
-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의 구성·운영사항 보완(안 제3조 ~ 제8조)
- 향토문화재 해제기준 신설(안 제10조제2항)
- 무형 향토문화재 지원 근거 마련(안 제16조제3항)

## 개 정 조 례 안 : 붙임1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붙임3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1. 3. 29. ~ 2021. 4. 19. (21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4
- 방침결정문 : 붙임5

## 〈 불임 1 〉

#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안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안산시의 향토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안산시 향토문화재(이하 “향토문화재”라 한다)라 함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열거된 문화재의 유형 중 국가나 경기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향토의 역사·문화·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보호 및 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, 무형문화재, 기념물,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.

**제3조(위원회의 설치)**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향토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안산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4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
2. 향토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원
3. 향토문화재의 환경 보전
4. 그 밖에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**제5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업무담당 실·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,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

해촉된 것으로 본다.

**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시장은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8조(간사 등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문화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, 서기는 문화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**제9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0조(지정 및 해제)**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소유자 등”이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정된 향토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향토문화재가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문화재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**제11조(고시 및 통지)**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향토문화재를 지정·해제하

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, 지체 없이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.

③ 제10조에 따른 지정과 해제 및 인정 등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**제12조(지정서 발급)**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재를 지정하면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, 지정서를 발급받은 향토문화재 소유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관리자 지정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향토문화재 관리자(이하 “관리자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향토문화재의 소유자
2. 향토문화재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
3. 향토문화재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

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재는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4조(보존관리)** ① 시장은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향토문화재 발굴 및 지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향토문화재는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향토문화재를 홍보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한다.

④ 향토문화재와 그에 따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할 수 있다.

⑤ 향토문화재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문화재 보전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필요시 향토문화재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**제15조(점검 및 조치)** 시장은 향토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향토문화재를 점검하고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

다.

**제16조(경비지원)** ① 향토문화재의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등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무형 향토문화재의 보존·전승을 위하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전승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7조(기록의 작성보관)** ① 시장은 향토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8조(홍보 등)** ① 시장은 향토문화재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향토문화재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.

**제19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문화재보호법」 및 「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」에 따라 지정된 “안산시 향토유적”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“안산시 향토문화재”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문화예술과
임 안 자	실·과장	문화예술과장
	직위·성명	김 정 아
	담당·팀장	문화재관리팀장
	직위·성명	조 성 진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민 지 (행정 2796)

안산시 향토문화재 제 호

## 향토문화재 지정서

명 칭 :

소 재 지 :

수 량 :

위 문화재를 안산시 향토문화재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안 산 시 장 (인)

(뒷면)

소유자	주 소	소재지 또는 보관장소	교부 또는 재교부년월일	기록인

변경사항

소유자	주 소	소재지 또는 보관장소	변경년월일	기록인

※ 주의사항

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
1. 향토문화재의 소유자(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)가 변경되었을 경우
2. 향토문화재의 소유자(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)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
3. 향토문화재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

[별지 제2호서식]

안산시 향토문화재 지정서 발급대장

① 발 급 번 호	② 명 칭	③ 지 정 번 호	④ 지정 년월일	⑤ 수 량	⑥ 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	소 유 자		⑩ 발급 구분	⑪ 발급 년월일	⑫ 발 급 자 인
						⑦ 주소	⑧ 생년 월일			

#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620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6월 18일  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회

## 수정이유

- 향토문화재를 발굴하여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함.

## 주요골자

- “보존관리”를 “보존 및 보호관리”로 수정하고, “발굴 및 지정”을 “발굴·지정·보호”로 수정 (안 제14조제1항)
- “향토문화재”를 “향토문화재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”으로, “검토하여야 한다”를 “검토하여 향토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”로 수정 (안 제14조제5항)

#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4조의 제목 “(보존관리)”를 “(보존 및 보호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발굴 및 지정”을 “발굴 · 지정 · 보호”로 한다.

안 제14조제5항 중 “향토문화재”를 “향토문화재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”으로, “검토하여야 한다”를 “검토하여 향토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4조(<u>보존관리</u>) ① 시장은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향토문화재 <u>발굴 및 지정</u>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· ④ (생 략)</p> <p>⑤ <u>향토문화재</u> 주변의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문화재 보전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(생 략)</p>	<p>제14조(<u>보존 및 보호관리</u>) ① ----- ----- <u>발굴 · 지정 · 보호</u>----- -----.</p> <p>② · ④ (원안과 같음)</p> <p>⑤ <u>향토문화재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</u> ----- ----- <u>검토하여 향토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(원안과 같음)</p>